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5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5월 19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김정숙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이 전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424호, 2007. 12. 29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.(안 제3조 및 제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해밀도서관 운영 실태는?	○ 일 43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, 독서실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410호
의 결 년월일	2009. 5. 21. (제152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5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이 전부개정(보건복지부령 제424호, 2007. 12. 29, 공포・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.(안 제3조 및 제8조)

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해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2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41조”로 한다

제8조 중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3조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42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설) 해밀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 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2조에 따른 점자도서관,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2. (생 략)	제3조(시설) ---------- ----------. 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---------- ---------- 2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인원) 수탁자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3조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되,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청소년자료실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.	제8조(인원) -------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2조에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

<관계법령발췌서>
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41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과 같이 구분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별표 4]

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(제41조관련)

구 분	시설의 종류 및 기능
2.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	차. 점자도서관 :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카.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: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

제42조(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)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
[별표 5]

2.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

나.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

(1)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

(차) 점자도서관 : 관광, 사서, 점자지도원, 대출열람원, 교정원 각 1명이상. 다만, 교정원은 점자지도원이 겸할 수 있다.

(카) 점서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: 소장, 편집인, 제판원, 교정원, 인쇄원, 제본원 각 1명이상